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131
----------	------

2023. 09. 11.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이유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원활한 계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계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5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6. 15.~7. 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이 금
년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5년 연장(2028.12.31.까지)하고자 서
울시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서울시는 당초 근거 법령이 다른¹⁾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서
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해 왔으나, 재정비촉진사업²⁾
의 목적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
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의 개정³⁾을 통해 2012년 1월 1일 부터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를 ‘주택사업특별회계’의 하위 계정인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이하 “재촉계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재촉계정의 존속기한은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1)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회계’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에 각각 그 근거를 두고 있음.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3) 서울특별시조례 제5143호, 2011.7.28. 일부개정(시행 2012.1.1.)

2018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개정⁴⁾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⁵⁾하였고, 4개월 후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음(붙임1. 참고).

- 재촉계정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재촉계정 존속기한의 연장 여부는 그간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촉계정 운용 실적과 현황점검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1)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3. 8. 현재
계	189	190	190	196	199
구역지정	16	14	13	13	15
추진위 구성	16	12	11	5	5
조합설립	30	32	25	32	31
사업시행	24	22	24	23	23
관리처분	14	13	16	16	17
착공	35	30	29	22	17
준공	54	67	72	85	91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추진 현황>

-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31개 재정비촉진지구⁶⁾ 내 199개의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최근 5년간 37개소가 준공되는 등 꾸준히 사업이 진행되어 2023년 8월 기준 전체 91개 구역이

4) 서울특별시조례 제6917호, 2018.10.4.일부개정(시행 2018.10.4.)

5) '14.5.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부칙 제14조제2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보도록 하였음.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개정('18.10.4.)하여 '18.12.31. 만료 예정이었던 재촉계정의 존속기한을 '23.12.31.까지 5년 연장하였음.

6) '18.3. 기준 32개 재정비촉진지구(중심지형 9개, 주거지형 23개)였으나, 왕십리지구가 사업완료되어 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23년 기준, 31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준공되었고, 108개 구역이 사업 추진 중에 있음.

○ 집행기관은, 현재 11개 구역에서 공공정비사업⁷⁾(7개소)과 신속통합기획(4개소)이 추진되고 있으며(붙임2. 참고), 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재촉지구에서 제척된 사업구역에 대한 촉진구역 재지정이 검토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와 연계한 광역적 기반시설 확보 및 노후 시설 정비 등을 위하여 재촉계정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특히,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는 '23년~'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도림천 제2지류 하천조성공사'에 131억원,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공사'에 407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 중⁸⁾이고, 거여마천지구 내 성내천 하천복원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어서 재촉계정의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며, 금년 5월 25일 재촉계정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결)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2) 재촉계정 운용현황

○ 최근 5년간 재촉계정의 세입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회계의 법정전입금(재산세의 10%)⁹⁾으로, '23년 기준 재촉계정 세입의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을 의미함

8) '도림천 제2지류 하천조성공사' :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중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 타당성조사 용역 중, 투자심사 요청

9)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입으로 한다.
2. 특별법 제2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8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재촉계정 세입 세부현황>

구분	2019년 (결산액)	2020년 (결산액)	2021년 (결산액)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
계	194,374	225,247	232,783	251,065	272,239
공유재산임대료	391	393	395	405	417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18	77	418	251	105
기타이자수입	0	2	0	0	0
공유재산매각대금	2,781	2,723	2,666	2,608	2,550
시·도비보조금반환	119	344	703	21	342
국고보조금	0	757	0	0	0
순세계잉여금	44	1,732	541	0	18,625
전년도이월사업비	0	701	173	0	0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322	3,458	17,766	5,657	3,510
기타회계전입금	143,866	158,437	187,234	219,441	221,625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0,500	53,700	20,500	20,500	20,500
예탁금이자수입	3,233	2,923	2,387	2,182	4,565

○ 최근 5년간의 세출집행률은 평균 99.3%으로, 세부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과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이는 재촉사업에 투입되고 남은 여유자금을 의미¹⁰⁾하는데, 최근 5년간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를 말한다.

10)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매년 예탁하는 금액¹¹⁾과 누적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추계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최근 5년간 재추계정 세출 세부현황>

구분	2019년 (집행액)	2020년 (집행액)	2021년 (집행액)	2022년 (집행액)	2023년 (예산액)
계	191,940	224,533	216,938	263,727	272,239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지원	461	252	115	159	770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85	89	79	78	70
예비비	0	0	0	0	634
도림천 제2지류 하천조성공사	0	0	0	0	165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0	0	0	0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71,000	220,200	213,500	258,700	265,500
재정비촉진사업 용자금 지원	7,700	3,000	3,000	4,790	5,000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공사	8,890	714	43	0	0
뉴타운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3,439	14	73	0	0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거지재생사업 도입	150	150	128	0	0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처리기준 재정비	98	96	0	0	0
정동사거리 도로구조 개선	47	18	0	0	0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흔적남기기 지원 사업	70	0	0	0	0

-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제외하면 ‘재정비촉진사업 용자금 지원’의 비중이 가장 크며 ’19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100%를 초과하는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붙임3. 참고).

11) '23.8.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금액은 총 4,564억 5천6백만원으로 이 금액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필요한 경우 상환하여 사용할 수 있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8.
예탁금	-	-	-	258,700	-
상환액 (예탁금원금회수입-재추계정)	40,500	53,700	20,500	20,500	-
예탁금 누계	292,456	238,756	218,256	456,456	456,456
이자수입	3,233	2,923	2,387	2,182	-

<최근 5년간 재촉계정 세출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용자금 지원	7,700	3,000	3,000	4,790	5,000
용자금 회수	3,440	3,535	18,184	5,908	5,833 (’23. 7월 현재)
회수율(%)	44.67	117.83	606.13	123.34	116.66

※ 2021년 회수수입 과다사유 : 중도상환 및 전액상환

- 종합하면,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은 199개 구역 중 준공된 91개소를 제외한 108개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기반시설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촉계정 연장은 필요하다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은 재촉사업에 직접 투입되지 못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는 여유자금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에서, 회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입 법 조 사 관 한승윤	02-2180-8207
입 법 조 사 관 조윤길	02-2180-8208

[붙임1] 관계법령(p.8)

[붙임2] 공공정비사업 및 신속통합기획 추진 현황(p.13)

[붙임3] 재정비촉진사업 용자금 지원 현황(p.14)

[붙임4]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p.15)

[붙임5]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별 상세 운영 현황(p.16)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차입금
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용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9.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5.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재정비 초깃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입으로 한다.
2. 특별법 제2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를 말한다.

②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9.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용자
10.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용자.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특별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상되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세입자 동산이전비의 용자
12. 과거 흔적 조성사업(주민의 삶의 모습·추억·애환이 담긴 거리나 동네의 흔적을 기록하거나 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비용의 보조
13. 지역특화사업(재정비촉진사업으로 사라지는 지역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비용
14.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15. 조합 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16.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설계비 등 용역비
17. 「교육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18.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보조

제5조의3(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보조 및 용자의 범위)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계정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 제5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다. 제5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라. 제5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마.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바. 제5조의2제2항제12호에 따른 과거 흔적 조성사업 비용

사. 제5조의2제2항제14호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아. 제5조의2제2항제16호에 따른 설계비 등 용역비의 비용

자. 제5조의2제2항제17호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2.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대행하는 비용

3. 조례 제15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② 특별법 영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계정에서 용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나. 제5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다.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라. 제5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건축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

2. 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가.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 제5조의2제2항제9호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용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의 범위 이내

다. 제5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사비는 건축공사비의 40퍼센트 이내

라. 제5조의2제2항제11호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마. 제5조의2제2항제14호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바. 제5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조합 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사. 제5조의2제2항제16호에 따른 설계비 등 용역비

아. 제5조의2제2항제17호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제5조의4(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붙임2 공공정비사업 및 신속통합기획 추진 현황

○ 공공 정비사업(7개 구역)

자치구	지구명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m ²)	진행사항	시행자
송파구	거여마천	거여새마을	재개발(주택형)	71,922	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LH
서대문구	홍제	홍은1	재개발(도시형)	11,571	사전기획 진행 중	SH
노원구	상계	상계3	재개발(주택형)	104,000	사전기획 진행 중	LH
성북구	장위	장위8	재개발(주택형)	121,634	정비계획 수립중	SH
성북구	장위	장위9	재개발(주택형)	84,248	정비계획 수립중	LH
영등포구	신길	신길1	재개발(주택형)	60,077	정비계획 수립중	LH
영등포구	신길	신길13	재건축	15,120	정비계획 수립중	SH

○ 신속통합기획(4개 구역)

자치구	지구명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m ²)	진행사항	비고
강서구	방화	방화2	재개발(주택형)	35,390	정비계획 수립중	
송파	거여마천	마천2	재개발(주택형)	79,069	신통기획(안) 수립중	
송파	거여마천	마천5	재개발(주택형)	108,040	정비계획 수립중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간데메공원	재개발(주택형)	102,735	신통기획(안) 수립중	

붙임3 재정비촉진사업 용자금 지원 현황

■ 최근 5년간 용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용자금 지원	7,700	3,000	3,000	4,790	5,000
용자금 회수	3,440	3,535	18,184	5,908	5,833 (’23. 7월 현재)
회수율(%)	44.67	117.83	606.13	123.34	116.66

※ 2021년 회수수입 과다사유 : 중도상환 및 전액상환

■ 2023년 용자금 신청 및 결정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역명	현황	신청액	결정액	비고
1	마천1	조합	2,550	630	
2	마천3	조합	2,870	630	
3	영등포1-12	조합	1,030	450	
4	한남4	조합	127	120	
5	한남5	조합	2,450	750	
6	전농8	조합	2,000	970	
7	노량진1	조합	1,000	350	
8	흑석1	조합	1,600	860	
9	길음5	조합	930	400	
계			14,557	5,160	

붙임4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

■ 2023년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세 입		세 출	
국민계정	경상적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 등)	55,240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1,052,000
	국고보조금 등	669,570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38,332
	국내차입금(모집공채)	155,000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212,559
	내부거래	624,650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	3,157
	보전수입 등(순세계잉여금 등)	21,760	주거안정방안 연구개발	3,528
	임시적세외수입(보조금반환수입 등)	270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2,15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12	예비비	894
			보전지출	9,379
			내부거래	6,199
소계	1,528,202	소계	1,528,202	
도정계정	경상적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 등)	445,490	행정운영경비	3,586
	국고보조금 등	94,089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155,102
	국내차입금(모집공채)	240,000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418,615
	내부거래	225,338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	24,329
	보전수입 등(순세계잉여금 등)	132,171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20,800
	임시적세외수입(보조금반환수입 등)	23,711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40,18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83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문화 개선	160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26,970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2,699
			도시환경정비	2,573
			전통문화계승 발전	2,645
			예비비	922
			보전지출	22,996
내부거래	441,600			
소계	1,163,182	소계	1,163,182	
재촉계정	경상적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 등)	522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	5,000
	내부거래	246,689	재정비축진사업 지원	1,105
	보전수입 등(순세계잉여금 등)	22,135	예비비	634
	임시적세외수입(보조금반환수입 등)	2,893	내부거래	265,500
	소계	272,239	소계	272,239

붙임5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별 상세 운영 현황

■ 재정비촉진사업계정

□ 운영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위한 특별법」 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 주요 세입·세출 내용(「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제5조의2)

세 입	세 출
1. 일반회계 전입금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
2. 시도비반환금수입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건축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	3.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조성·운영 및 관리 위한 경비
4. 과밀부담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4.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재산세과세특례분의 10%	5. 재정비촉진지구안 존치지역의 정비사업비의 지원
6. 순세계잉여금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예탁금상환금 및 이자수입	7.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7. 이자수익금, 기타수익금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과 제도 발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8. 임대료 수입	9.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용자
	10.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용자.
	11.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세입자 동산이전비의 용자
	12. 과거 흔적 조성사업 비용의 보조
	13. 지역특화사업(재정비촉진사업으로 사라지는 지역산업을 육성·지원 위한 사업) 비용
	14. 안전진단 비용
	15. 조합 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16.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설계비 등 용역비
	17. 「교육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18.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보조

○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세입·세출 내용

세 입	세 출
1. 일반회계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 4. 과밀부담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 재산세과세특례분의 10% 6. 차입금 7.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밖의 수익금 8.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9.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징수 5.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지등의 주거안정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7.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8.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9.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10.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2023년 세입·세출 내역

○ 주요 세입 내역

(단위: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민간용자 회수 및 이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시도비반환 금수입	순세계 잉여금	재 산 세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이자
417	3,615	2,551	342	18,625	221,625	20,500	4,565
0.2%	1.3%	0.9%	0.1%	6.8%	81.4%	7.5%	1.7%

- 재산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이 안정적 수입임

○ 주요 세출 내역

(단위:백만원)

기반시설 설치	용자금 지원 등	예탁금	예비비
265	5,840	265,500	634
0.1%	2.1%	97.5%	0.2%

○ 최근 4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9	2020	2021	2022
세입액	194,374	225,247	232,783	251,065

- 세입세부 현황

(단위:백만원)

세입과목	2022년		2023년	
	세입액(결산)	비율	예산액(편성)	비율
계	251,065		272,239	
공유재산임대료	405	0.2%	417	0.2%
용자금회수이자수입	251	0.1%	105	0.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608	1.0%	2,551	0.9%
시도비반환금수입	21	0.0%	342	0.1%
순세계잉여금	-	-	18,625	6.8%
민간용자금회수수입	5,657	2.3%	3,510	1.3%
기타회계전입금	219,441	87.4%	221,625	81.4%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0,500	8.2%	20,500	7.5%
예탁금이자수입	2,182	0.9%	4,565	1.7%

※ 공유재산임대료 : 은평자립형사립고(하나고)임대료 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길음재정비촉진지구 학교용지 매각수입(계성고등학교)

기타회계전입금 : 일반회계의 법정전입금으로 재산세(과세특례분) 징수총액의 10%

예탁금이자수입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 최근 4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9	2020	2021	2022
세출집행액	191,940	224,533	216,938	263,727

- 세출 세부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집행부서	2022년		2023년	
		집행액	비율	편성액	비율
계		263,727		272,239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지원	재정비촉진사업과	159	0.1%	770	0.3%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재정비촉진사업과	78	0.0%	70	0.0%
예비비	재정비촉진사업과	-	-	634	0.2%
도림천 제2지류 하천조성공사	재정비촉진사업과	-	-	165	0.1%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재정비촉진사업과	-	-	100	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재정비촉진사업과	258,700	98.1%	265,500	97.5%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주거정비과	4,790	1.8%	5,000	1.8%

■ 국민주택사업계정

□ 운영근거

- 「주택법」 제8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제4조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세출)

□ 주요 세입·세출 내용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제4조)

세 입	세 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보조금 및 융자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입주자로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및 입주금 4. 일반회계 전입금 5. 소속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밖의 수익금 6. 제2항제5호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 8. 「주택법」 제20조제2항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 9. 그 밖의 국민주택사업 관련 수입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3. 국민주택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상환 5.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융자금 또는 보조금 6.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7. 국민주택의 관리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주택법」 제20조제2항의 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또는 시장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제한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10.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 2023년 세입·세출 내역

○ 주요 세입 내역

(단위:백만원)

임대주택 임대수입	국고보조금	모집공채	순세계잉여금	예수금 수입	기타
55,090	669,570	155,000	19,733	624,200	4,609
3.6%	43.8%	10.1%	1.3%	40.8%	0.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6,242억원(40.8%), 국고보조금 6,696억원(43.8%) 및 임대수입 551억원(3.6%) 등으로 구성

○ 주요 세출 내역

(단위:백만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주택 건설	주거복지 사업	기타사업	차입금 상환 등	예비비
788,425	212,555	100,322	242,507	167,921	15,578	894
51.6%	13.9%	6.6%	15.9%	11.0%	1.0%	0.1%

○ 최근 4년 세입현황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2019	2020	2021	2022
세입액	1,078,115	1,508,777	1,309,880	1,473,286

- 세입세부 현황

(단위:백만원)

세입과목	2022년		2023년	
	세입액(결산)	비율	예산액(편성)	비율
계	1,473,286		1,528,202	
공유재산임대료	67,660	4.6%	55,090	3.6%
공공예금이자수입	401	0.0%	150	0.0%
기타이자수입	90	0.0%	-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5	0.0%	-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2,721	3.6%	-	-
그외수입	1,131	0.1%	-	-
위탁비반환수입	-	-	270	0.1%
부담금	13	0.0%	1,712	0.1%
기금	538,426	36.5%	663,150	43.4%
국고보조금	11,940	0.8%	6,420	0.4%

모 집 공 채	-	-	155,000	10.1%
순 세 계 잉 여 금	-	-	19,733	1.3%
기 타 회 계 전 입 금	237,378	16.1%	-	-
국 고 보 조 금 등 반 환 금	-	-	2,027	0.1%
예 수 금 수 입	563,500	38.2%	624,200	40.8%
예 탁 금 이 자 수 입	-	-	450	0.1%

※ 공유재산임대료 :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입

기타회계전입금 : 일반회계 전입금

예수금수입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 최근 4년 세출현황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2019	2020	2021	2022
세출집행액	996,283	1,438,898	1,371,635	1,181,260

- 세출 세부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집행부서	2022년		2023년	
		집행액	비율	편성액	비율
계		1,181,260		1,528,202	
기 존 주 택 매 입 임 대	주 택 정 책 과	599,354	50.7	788,425	51.6
사 회 주 택 공 급	주 택 정 책 과	2,471	0.2	2,086	0.1
민 간 임 대 주 택 공 급 활 성 화	주 택 정 책 과	10,568	0.9	10,100	0.7
공 공 토 지 건 설 형 서 울 리 츠 노 장 청 세 대 통 합 주 택 공 급	주 택 정 책 과	4,509	0.4	7,623	0.5
청 년 월 세 지 원 등 주 거 복 지 사 업	주 택 정 책 과	150,536	12.7	242,507	15.9
민 간 참 여 형 장 기 전 세 주 택 건 설 추 진	전 략 주 택 공 급 과	4,201	0.4	3,157	0.2
공 공 임 대 주 택 건 설 사 업	공 공 주 택 과	115,603	9.8	100,322	6.6
역 세 권 공 공 임 대 주 택 매 입, 위 탁 관 리	공 공 주 택 과	14,050	1.2	34,834	2.3
장 기 안 심 주 택 공 급 활 성 화	공 공 주 택 과	28,494	2.4	90,960	6.0
역 세 권 청 년 주 택 매 입, 위 탁 관 리, 공 급 활 성 화 등	전 략 주 택 공 급 과	169,064	14.3	212,555	13.9
빈 집 활 용 매 입, 주 거 환 경 개 선 등	주 거 환 경 개 선 과	1,083	0.1	2,153	0.1
주 택 에 관 한 조 사 연 구 사 업 등 기 타 사 업	주 택 정 책 지 원 센 터 건 축 기 획 과 공 공 주 택 과 전 략 주 택 공 급 과	19,328	1.6	17,008	1.1
차 입 금 상 환, 국 고 보 조 금 반 환 등	주 택 정 책 과 공 공 주 택 과 문 화 시 설 과	16,998	1.4	15,578	1.0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예 탁	주 택 정 책 과	45,000	3.8	-	-
예 비 비	주 택 정 책 과	-	-	894	0.1

■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 운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9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제5조(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 주요 세입·세출 내용(「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

세 입	세 출
1. 도정법에 의해 공급한 임대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경비
2. 청산징수금	2. 청산금의 지급
3. 국고보조금·융자금	3. 융자금 및 차입금의 상환
4.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4.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
5. 토지의 사용, 처분에 따른 수입금	5.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6. 재산세(과세특례분10%) 전입금	6. 정비구역안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금
7.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7.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 및 행정관리경비
8. 국공유지 매각대금	8.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사업 및 수탁사업비
9.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10. 국민주택기금 등의 차입금	10.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11. 재투기금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11.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2.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	12. 그 밖의 정비사업 관련 필요경비
13. 기타 정비사업관련 수입금	

※ 정비기금 세입 및 세출 내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6조)

세 입	세 출
1.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1. 정비사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 계획 수립, 추진위 운영자금 대여 등 경비
2.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청산금의 지급
3.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3. 임차인의 주거안정
4. 국공유지 매각대금	4.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5.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	5. 주택개량의 지원
6. 재산세(과세특례분10%) 전입금	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 그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원	7.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금품 향응 등 신고 포상금

□ 2023년 세입·세출 내역

○ 주요 세입 내역

(단위:백만원)

재 산 세	임대주택 임대수입	국공유지 매각대금	민간용자 회수	국고 보조금	모집공채	순세계 잉여금	기타
221,625	320,594	119,474	13,151	94,089	240,000	119,278	34,972
19.1%	27.6%	10.3%	1.1%	8.1%	20.6%	10.3%	3.0%

○ 주요 세출 내역

(단위:백만원)

임대주택 매입·관리 등	정비사업 등	재생사업 등	예탁금	차입금 상환 등	예비비 등
573,717	67,087	53,274	441,600	22,996	4,508
49.3%	5.8%	4.6%	38.0%	2.0%	0.4%

○ 최근 4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9	2020	2021	2022
세입액	1,282,230	1,386,340	1,231,235	1,228,939

- 세입세부 현황

(단위:백만원)

세 입 과 목	2022년		2023년	
	세입액(결산)	비율(%)	예산액(편성)	비율(%)
계	1,228,939		1,163,182	
공 유 재 산 임 대 료	477,190	38.8	320,594	27.6
청 산 금 수 입	2,172	0.5	1,490	0.1
매 각 사 업 수 입	85,026	6.9	119,474	10.3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2,247	0.2	3,067	0.3
시 도 비 보 조 금 반 환 수 입	2,898	0.2	2,497	0.2
위 탁 비 반 환 수 입	3,187	0.3	2,561	0.2

그 외 수 입	6,583	0.5	1,495	0.1
지 난 연 도 수 입	9,764	0.8	17,159	1.5
변 상 금	604	0.0	671	0.1
부 담 금	13	0.0	1,712	0.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905	2.5	5,433	0.5
기 금	93,336	7.6	88,656	7.6
민 간 용 자 금 회 수 수 입	11,785	1.0	12,893	1.1
민 간 용 자 금 회 수 이 자 수 입	223	0.0	258	0.0
모 집 공 채	70,000	5.7	240,000	20.6
순 세 계 잉 여 금	196,270	16.0	119,278	10.3
국 고 보 조 금 사 용 잔 액	67	0.0	-	-
전 년 도 이 월 사 업 비	16,882	1.4	-	-
기 타 회 계 전 입 금	219,441	17.9	221,625	19.1
예 탁 금 이 자 수 입	345	0.0	3,713	0.3
기 타 이 자 수 입	-	-	607	0.1

※ 공유재산임대료 : 재개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재건축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기타회계전입금 : 일반회계의 법정전입금으로 재산세(과세특례분) 징수총액의 10%

예탁금상환금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1년 거치 일시 상환)

매각사업수입 : 정비구역내 사유지 매각수입 전액과 국유지 매각수입의 20%, 공유지 매각수입의 30%

○ 최근 4년 세출현황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2019	2020	2021	2022
세출집행액	1,095,093	1,273,486	972,106	1,032,814

- 세출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집행부서	2022년		2023년	
		집행액	비율	편성액	비율
계		1,032,814		1,163,182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위탁관리 등	공공주택과 주택정책과	337,387	32.7	393,585	33.8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주택정책과	5,983	0.6	-	-
재건축임대주택 매입, 위탁관리	공공주택과	141,618	13.7	180,132	15.5
계획적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지원	전략주택공급과	13,416	1.3	24,329	2.1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주거문화 개선	공동주택지원과	386	0.0	160	0.0
북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	한옥정책과	1,152	0.1	2,645	0.2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심재창조과 도시정비과	361	0.0	2,573	0.2
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주거환경개선과	69,537	6.7	29,669	2.6
주택 정비사업 용자금 지원	주거정비과	17,790	1.7	25,000	2.1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의 추진	주거정비과	8,438	0.8	15,185	1.3
안심집수리 사업 등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과	27,046	2.6	20,800	1.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주거정비과	336,800	32.6	441,600	38.0
행정운영경비	주거정비과	3,059	0.3	3,586	0.3
차입금 상환, 국고보조금 반환 등	주거정비과 공공주택과 주택정책과	69,841	6.8	22,996	2.0
예비비	주거정비과	-	-	922	0.1